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 23.09.22. 문화일보에 공고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II. 신청기준 (무주택, 소득여부)	정정 전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정정 후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25p)	정정 전	<p>■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 3])</p> <p>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p> <p>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p> <p>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p> <p>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p> <p>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p>
		정정 후	삭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분양홍보관 내 유니트가 없음에 따라 청약 신청자는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를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실물 유니트를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에 관련된 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한 분양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에는 혼잡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첨자(계약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은 직접방문하여 계약체결 및 관련서류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02-3394-4494)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상담전화(02-3394-4494)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위치 및 분양대상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 공급대상 : 아파트 총 326세대 중 일반분양(국민주택) 121세대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438**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며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도시시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가상한제 및 재당첨제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답십리1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디엘건설 주식회사 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사용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2.(금)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및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 요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을 충족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과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에 따라 재당첨제한 및 거주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1항[별표3] 5호가목의 1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관련안내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일자를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

나 확장 계약, 전대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3. 10. 04(수)	2023. 10. 05(목)	2023. 10. 06(금)	2023. 10. 13.(금)	2023. 12. 11(월) ~2023. 12. 13(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홍보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80-7, 203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오전 12시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소득, 세대주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필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6개월, 6회이상)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이상)	필요 (6개월, 6회이상)	필요 (12개월, 12회이상)	필요 (12개월, 12회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12개월, 12회이상)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적용	-	-	-
소득 요건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공급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1층 6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326세대 중 일반분양 121세대
[특별공급 97세대(일반[기관추천] 12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 대상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국민 주택	2023000438	01	059.9533A	59A	59.9533	21.7780	81.7313	43.2324	124.9637	34.4887	41	4	4	13	2	10	33	8	4
		02	059.9817B	59B	59.9817	22.3511	82.3328	43.2529	125.5857	34.7425	22	2	2	7	1	6	18	4	2
		03	084.9870A	84A	84.9870	29.2226	114.2096	61.2843	175.4939	48.1938	27	3	3	8	1	7	22	5	2
		04	084.9887B	84B	84.9887	30.9862	115.9749	61.2855	177.2604	48.9387	23	2	2	7	1	6	18	5	2
		05	084.8648C	84C	84.8648	30.2012	115.0660	61.1961	176.2621	48.5552	8	1	1	2	-	2	6	2	1
		합 계											121	12	12	37	5	31	97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59A	59B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	-	2
	장애인	1	-	1	-	-	2
	의사상자	-	1	-	1	-	2
	다문화가족	-	1	-	-	1	2
	북한이탈주민	1	-	-	1	-	2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2	1	2	1	1	7
	경기도, 인천광역시(50%)	2	1	1	1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7	8	7	2	3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1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6	7	6	2	31
합 계		33	18	22	18	6	97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533A	059.9817B	084.9870A	084.9887B	084.8648C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5년 3월**로 예정 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3. 공급금액(분양대금)

[단위 : 원, 세대]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5%)	2회(15%)	3회(15%)	4회(15%)	
								계약시	2024.02.20.	2024.05.20.	2024.08.20.	2024.11.20.	입주지경일
59A	41	105동 4호 106동 3호	1	1	363,384,000	460,616,000	824,000,000	82,4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247,200,000
			2	2	374,850,000	475,150,000	850,000,000	85,000,000	127,500,000	127,500,000	127,500,000	127,500,000	255,000,000
			3	2	381,906,000	484,094,000	866,000,000	86,6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259,800,000
			4	2	385,875,000	489,125,000	875,000,000	87,50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262,500,000
			5	2	389,844,000	494,156,000	884,000,000	88,4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265,200,000
			6	2	391,167,000	495,833,000	887,000,000	88,700,000	133,050,000	133,050,000	133,050,000	133,050,000	266,100,000
			15	1	401,310,000	508,690,000	910,000,000	91,000,000	136,500,000	136,500,000	136,500,000	136,500,000	273,000,000
			19	1	404,838,000	513,162,000	918,000,000	91,8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275,400,000
		104동 1호 105동 1,2호 106동 1호	1	3	362,502,000	459,498,000	822,000,000	82,200,000	123,300,000	123,300,000	123,300,000	123,300,000	246,600,000
			2	4	373,968,000	474,032,000	848,000,000	84,8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254,400,000
			3	4	378,819,000	480,181,000	859,000,000	85,900,000	128,850,000	128,850,000	128,850,000	128,850,000	257,700,000
			4	4	382,788,000	485,212,000	868,000,000	86,8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260,400,000
			5	4	386,316,000	489,684,000	876,000,000	87,600,000	131,400,000	131,400,000	131,400,000	131,400,000	262,800,000
			6	4	390,285,000	494,715,000	885,000,000	88,50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132,750,000	265,500,000
			7	1	391,167,000	495,833,000	887,000,000	88,700,000	133,050,000	133,050,000	133,050,000	133,050,000	266,100,000
			12	1	396,900,000	503,100,000	900,000,000	90,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270,000,000
			17	1	400,869,000	508,131,000	909,000,000	90,900,000	136,350,000	136,350,000	136,350,000	136,350,000	272,700,000
			19	2	401,751,000	509,249,000	911,000,000	91,100,000	136,650,000	136,650,000	136,650,000	136,650,000	273,300,000
			59B	22	105동 3호 106동 4호	1	1	366,471,000	464,529,000	831,000,000	83,100,000	124,650,000	124,650,000
2	2	378,378,000				479,622,000	858,000,000	85,800,000	128,700,000	128,700,000	128,700,000	128,700,000	257,400,000
3	2	382,788,000				485,212,000	868,000,000	86,8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260,400,000
4	2	387,198,000				490,802,000	878,000,000	87,80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263,400,000
5	1	390,726,000				495,274,000	886,000,000	88,600,000	132,900,000	132,900,000	132,900,000	132,900,000	265,800,000
6	2	394,254,000				499,746,000	894,000,000	89,4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268,200,000
7	2	395,577,000				501,423,000	897,000,000	89,700,000	134,550,000	134,550,000	134,550,000	134,550,000	269,100,000
14	1	404,397,000				512,603,000	917,000,000	91,70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275,100,000
21	1	406,602,000				515,398,000	922,000,000	92,200,000	138,300,000	138,300,000	138,300,000	138,300,000	276,600,000
106동 2호	1	1			363,384,000	460,616,000	824,000,000	82,4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247,200,000
	2	1			375,291,000	475,709,000	851,000,000	85,100,000	127,650,000	127,650,000	127,650,000	127,650,000	255,300,000
	3	1			381,906,000	484,094,000	866,000,000	86,6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259,800,000
	4	1			385,875,000	489,125,000	875,000,000	87,50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262,500,000
	5	1			389,844,000	494,156,000	884,000,000	88,4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265,200,000
	6	1			393,372,000	498,628,000	892,000,000	89,200,000	133,800,000	133,800,000	133,800,000	133,800,000	267,600,000
	7	1			394,695,000	500,305,000	895,000,000	89,500,000	134,250,000	134,250,000	134,250,000	134,250,000	268,500,000
	17	1			404,397,000	512,603,000	917,000,000	91,70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137,550,000	275,10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5%)	2회(15%)	3회(15%)		4회(15%)	
								2024.02.20.		2024.05.20.	2024.08.20.	2024.11.20.	입주지정일		
84A	27	102동 3호 104동 3호	1	1	460,845,000	584,155,000	1,045,000,000	104,500,000	156,750,000	156,750,000	156,750,000	156,750,000	313,500,000		
			2	1	476,280,000	603,720,000	1,080,000,000	108,000,000	162,000,000	162,000,000	162,000,000	162,000,000	324,000,000		
			3	2	483,777,000	613,223,000	1,097,000,000	109,700,000	164,550,000	164,550,000	164,550,000	164,550,000	329,100,000		
			4	2	488,187,000	618,813,000	1,107,000,000	110,700,000	166,050,000	166,050,000	166,050,000	166,050,000	332,100,000		
			5	2	492,597,000	624,403,000	1,117,000,000	111,700,000	167,550,000	167,550,000	167,550,000	167,550,000	335,100,000		
			6	2	496,566,000	629,434,000	1,126,000,000	112,6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337,800,000		
			7	1	497,889,000	631,111,000	1,129,000,000	112,900,000	169,350,000	169,350,000	169,350,000	169,350,000	338,700,000		
			12	1	506,709,000	642,291,000	1,149,000,000	114,900,000	172,350,000	172,350,000	172,350,000	172,350,000	344,700,000		
		18	1	509,796,000	646,204,000	1,156,000,000	115,6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346,800,000			
		1	1	459,963,000	583,037,000	1,043,000,000	104,300,000	156,450,000	156,450,000	156,450,000	156,450,000	312,900,000			
		2	2	472,752,000	599,248,000	1,072,000,000	107,200,000	160,800,000	160,800,000	160,800,000	160,800,000	321,600,000			
		3	2	480,249,000	608,751,000	1,089,000,000	108,900,000	163,350,000	163,350,000	163,350,000	163,350,000	326,700,000			
		4	2	484,659,000	614,341,000	1,099,000,000	109,90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329,700,000			
		5	2	489,069,000	619,931,000	1,109,000,000	110,900,000	166,350,000	166,350,000	166,350,000	166,350,000	332,700,000			
		6	2	495,243,000	627,757,000	1,123,000,000	112,300,000	168,450,000	168,450,000	168,450,000	168,450,000	336,900,000			
		7	1	496,566,000	629,434,000	1,126,000,000	112,6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337,800,000			
		12	1	503,181,000	637,819,000	1,141,000,000	114,100,000	171,150,000	171,150,000	171,150,000	171,150,000	342,300,000			
		20	1	508,914,000	645,086,000	1,154,000,000	115,4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346,200,000			
		84B	23	104동 2호	1	1	466,578,000	591,422,000	1,058,000,000	105,8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317,400,000
					2	1	479,808,000	608,192,000	1,088,000,000	108,8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326,400,000
3	1				487,305,000	617,695,000	1,105,000,000	110,500,000	165,750,000	165,750,000	165,750,000	165,750,000	331,500,000		
4	1				491,715,000	623,285,000	1,115,000,000	111,500,000	167,250,000	167,250,000	167,250,000	167,250,000	334,500,000		
5	1				498,330,000	631,670,000	1,130,000,000	113,0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339,000,000		
6	1				502,299,000	636,701,000	1,139,000,000	113,900,000	170,850,000	170,850,000	170,850,000	170,850,000	341,700,000		
7	1				504,063,000	638,937,000	1,143,000,000	114,300,000	171,450,000	171,450,000	171,450,000	171,450,000	342,900,000		
12	1				512,442,000	649,558,000	1,162,000,000	116,200,000	174,300,000	174,300,000	174,300,000	174,300,000	348,600,000		
1	1			463,491,000	587,509,000	1,051,000,000	105,100,000	157,650,000	157,650,000	157,650,000	157,650,000	315,300,000			
2	2			478,485,000	606,515,000	1,085,000,000	108,500,000	162,750,000	162,750,000	162,750,000	162,750,000	325,500,000			
3	2			485,982,000	616,018,000	1,102,000,000	110,200,000	165,300,000	165,300,000	165,300,000	165,300,000	330,600,000			
4	2			490,392,000	621,608,000	1,112,000,000	111,200,000	166,800,000	166,800,000	166,800,000	166,800,000	333,600,000			
5	2			494,802,000	627,198,000	1,122,000,000	112,200,000	168,300,000	168,300,000	168,300,000	168,300,000	336,600,000			
6	2			498,771,000	632,229,000	1,131,000,000	113,100,000	169,650,000	169,650,000	169,650,000	169,650,000	339,300,000			
7	2			500,535,000	634,465,000	1,135,000,000	113,500,000	170,250,000	170,250,000	170,250,000	170,250,000	340,500,000			
14	1			509,796,000	646,204,000	1,156,000,000	115,6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346,800,000			
20	1			515,088,000	652,912,000	1,168,000,000	116,800,000	175,200,000	175,200,000	175,200,000	175,200,000	350,400,000			
84C	8			103동 3호	1	1	460,404,000	583,596,000	1,044,000,000	104,4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313,200,000
					2	1	473,193,000	599,807,000	1,073,000,000	107,300,000	160,950,000	160,950,000	160,950,000	160,950,000	321,900,000
					3	1	480,690,000	609,310,000	1,090,000,000	109,000,000	163,500,000	163,500,000	163,500,000	163,500,000	327,000,000
		4	1		487,305,000	617,695,000	1,105,000,000	110,500,000	165,750,000	165,750,000	165,750,000	165,750,000	331,500,000		
		5	1		491,715,000	623,285,000	1,115,000,000	111,500,000	167,250,000	167,250,000	167,250,000	167,250,000	334,500,000		
		6	1		495,684,000	628,316,000	1,124,000,000	112,4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337,200,000		
		7	1		497,448,000	630,552,000	1,128,000,000	112,800,000	169,200,000	169,200,000	169,200,000	169,200,000	338,400,000		
		14	1		506,709,000	642,291,000	1,149,000,000	114,900,000	172,350,000	172,350,000	172,350,000	172,350,000	344,700,000		

-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상기 공급금액은 총·타입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본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주택가격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입니다.
-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고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격은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

- ※ 아파트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 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또한 동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59A	12,529,000	2,505,800	10,023,200
59B	13,255,000	2,651,000	10,604,000
84A	15,026,000	3,005,200	12,020,800
84B	14,256,000	2,851,200	11,404,800
84C	15,840,000	3,168,000	12,672,000

- ※ 서울특별시 내 분양된 단지의 발코니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마이너스옵션 선택 불가)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각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 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형 계약세대만 옵션선택 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판매가격	비 고
59A, 59B	LG전자	거실 + 침실1	3,400,000	택 1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5,900,000	
84A, 84B, 84C	LG전자	거실 + 침실1	3,600,000	택 1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4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거실 냉매배관, 침실1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냉매배관, 침실1(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부위의 우물천장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현관 중문	전 주택형	현관	3연동슬라이딩 도어(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1,800,000	양방향 댐핑, 화재감지기 포함가격 / 신발장묘 건식벽 삭제비용 차감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을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벽패널 또는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천장물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건식벽으로 마감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부위 신발장 케이스 너비가 변경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은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작동방식 등)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류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오픈형 신발장	59A, 59B, 84A, 84C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84B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000,000	
침실1 불박이장	59A, 59B	침실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 (S5BBPU)	4,500,000	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2,350,000	
	84A		불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 (S5BBPU)	4,000,000	택1
			불박이장	1,850,000	
	84B, 84C		불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 (S5BBPU)	4,100,000	택1
불박이장	1,950,000				
침실2 불박이장	59B	침실2	불박이장	950,000	
	84B, 84C		불박이장	1,100,000	
침실3 불박이장	59A	침실3	불박이장	1,550,000	

- 불박이 가구 옵션선택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 가구 옵션 미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불박이장 규격은 평면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 옵션 선택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걸이 및 다용도랙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킥라인 선반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으로 설치되며, 오픈형 신발장 판매가격 산정시 기본형 신발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상부 LED조명,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59A, 59B 타입의 경우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화장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장대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불박이장(의류관리기포함)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의류관리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해당타입 가구 설치부위 창호의 커튼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불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판매가격	비고
비스포크 냉장고	전 주택형	삼성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키큰서랍장	6,1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품 일반냉장고 및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오브제 냉장고	전 주택형	LG전자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5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품 일반냉장고 및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전 주택형	LG전자	인덕션 3구 (BEI3GQBI)	1,200,000	- 기본제품 SK매직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 반영 - 전기관 추가 및 가스차단장치 추가설치비용 반영 (GRA-BI322H 제품은 가스차단장치 제외)
		LG전자	오브제 인덕션 3구 (BEI3WWQLBI)	1,400,000	
		SK매직	인덕션 2구 + 가스 1구 (GRA-BI322H)	850,000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식기 세척기	84A,B,C	LG전자	식기세척기 12인용 (DIB22S) _ 판넬부착형	1,2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품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SK매직	식기세척기 14인용 (DWA-90R5B) _ 판넬부착형	1,350,000	
전기오븐	전 주택형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5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품 주방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내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 (NQ36A6588CW)	45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650,000	

- 비스포크 냉장고 또는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설치시 삭제되는 부위는 비교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각 주택형별 비스포크 냉장고 또는 오브제 냉장고 선택시 키큰서랍장이 동시에 설치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가전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 제품조합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대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GRA-BI322H 제품만 가스1구 쿡탑 설치로 인해 가스가 연결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기본 설치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주방하부장 및 아일랜드장내 전자레인지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일랜드장내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시 가구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주방 벽 마감 (엔지니어드스톤)	59A, 59B	주방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ALPAMAYO)	77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A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ALPAMAYO)	62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B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ALPAMAYO)	92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C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ALPAMAYO)	92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59A	거실	STATUARIO SOFT (무광)	3,300,000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TESSINO IVORY PULIDO (유광)	4,300,000		
	59B		STATUARIO SOFT (무광)	2,350,000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TESSINO IVORY PULIDO (유광)	3,100,000		
	84A		STATUARIO SOFT (무광)	3,350,000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TESSINO IVORY PULIDO (유광)	4,350,000		
	84B		STATUARIO SOFT (무광)	6,400,000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TESSINO IVORY PULIDO (유광)	8,600,000		
84C	STATUARIO SOFT (무광)	4,350,000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TESSINO IVORY PULIDO (유광)	5,850,000				
세대공용부 디자인 패널	59A, 59B	거실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1개면 + 복도 주변 벽면	1,45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84A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1개면 + 복도 주변 벽면	1,800,000		
	84B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1개면 + 복도 주변 벽면	1,900,000		
	84C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1개면 + 복도 주변 벽면	1,550,000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59A,59B	전실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 + 침실2 + 침실3 (모던플렉스 / 143mm)	8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 + 침실2 + 침실3 (노르딕플렉스 / 143mm)	800,000		
	84A,84B, 84C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모던플렉스 / 143mm)	1,1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노르딕플렉스 / 143mm)	1,100,000		

-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또는 복도 아트월에 세라믹 패널 마감을 두가지 제품 중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라믹 패널 마감 선택시 해당 부위 기본제공 아트월 타일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거실 창호 주변 및 거실 뒤쪽 벽면, 복도 주변 벽면에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시공됩니다.
- 거실 부위 세라믹 패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아트월타일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또는 거실 복도 옵션인 아트월 세라믹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마감재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옵션은 기본 설치되는 주방벽 타일 마감과의 차인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옵션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마감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 확장 기본제공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은 본 공사시 자재 발주시기 차이로 인해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마감 옵션은 전체 실 일괄 선택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시 기본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폭115mm)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시 마감자재 (세라믹패널, 디자인 패널, 엔지니어드스톤 등)에 의한 나누기, 상세도 변경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색온도 디밍시스템	59A, 59B	색온도디밍시스템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20,000	
	84A, 84B, 84C	색온도디밍시스템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70,000	

- 색온도디밍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 ~ 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색온도디밍시스템은 전체 거실 및 침실 일괄 선택만 가능(개별 선택 불가)합니다.
- 색온도디밍시스템 판매가격은 기존 직부등 및 스위치와 관련된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욕실 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 타입	욕실1(부부) + 욕실2(공용)	비데일체형 양변기	650,000	기본제공 욕실1(부부) 분리형비데 및 투피스형 양변기 / 욕실2(공용) 투피스형 양변기 차인액 반영
욕실 복합 환풍기	전 타입	욕실1(부부) + 욕실2(공용)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920,000	기본제공 환기디퓨저 / 배기팬 차인액 반영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환풍기 옵션은 욕실1 및 욕실2 동시 설치 옵션선택만 가능하며, 욕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옵션 미선택시 욕실1 분리형비데 및 투피스형 양변기, 욕실2는 투피스형 양변기가 설치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컨트롤러는 옵션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미선택시 욕실 안쪽에 환기 디퓨저가 설치됩니다.
- 복합 환풍기 선택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디엘건설 주식회사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액의 납부계좌는 동호수별로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계좌번호는 동호수별로 다름)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은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이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준공 이후 현관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0%,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금리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및 잔금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익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신청기준(무주택, 소득여부)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일반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기타(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2.)	100%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 경쟁 발생시 해당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시 잔여물량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간 다시 경쟁함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 각각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됨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동일단지 내에서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단지의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 제한 등.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청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나의 청약제한사항]→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서 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에 속한 자(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사항 확인은 해당 배우자 등이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할 경우 확인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원의 구성요건 확인은 제2조 제2의3호,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적용대상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원]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0,415,123	12,195,290	12,864,787	13,922,622	14,980,458	16,038,293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우측에 기재된 수당 이외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수당 중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보상급여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예비대상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서울북부 보건지청 복지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의사상자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다문화가족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기관추천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국가유공자	1	-	1	-	-	2
	장애인	1	-	1	-	-	2
	의사상자	-	1	-	1	-	2
	다문화가족	-	1	-	-	1	2
	북한이탈주민	1	-	-	1	-	2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	2
합계		4	2	3	2	1	12

■ 당첨자 선정방법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부동산원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10.04(수))**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되고, 신청 기한 내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표1)지역우선공급에 따르며 동일지역 내 아래의 「배정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자는 수도권(인천, 경기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우선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정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분

[단위: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0,415,123	12,195,290	12,864,787	13,922,622	14,980,458	16,038,29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00퍼센트 이하여야 함)
 - ② 세대수의 3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임양) 임양관계증명서(임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임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공급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 그 외 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 그 외 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축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각각 신청, 부부 각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접수할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규칙 제2조의 세대원 정의에 따라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있어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간주함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함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를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 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3.10.04(수) (청약 Home :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 : 10:00~14:00)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380-7,2층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분양홍보관) 	인터넷 청약신청
	• 1순위	2023.10.05.(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2순위	2023.10.06.(금) (09: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은행 접수 불가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공급구분별·순위별 신청일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순위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2.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요]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s://www.dlcon-apt.co.kr/)로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실물 유닛트를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자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VI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9: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현장접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은행 영업시간 내)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양홍보관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른 계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사전당첨자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 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3.10.13.(금)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3.10.19.(목)~10.22(일) 10:00~16:00	2023.12.11.(월)~12.13.(수) 10:00~16:00	추후 일정 분양 홈페이지 고지 (https://www.dlcon-apt.co.kr/)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9-2, 2층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분양홍보관』 ※ 상기 장소는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분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 될 경우 분양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순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0.13(금) ~ 2023.10.22(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안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3.10.1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현장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 2023.10.19.(목) ~ 10.22.(일), 예비입주자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		① 당청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⑥ 복무확인서	본인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⑧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⑨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⑩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위임장	본인	• 당청자 인감도장 날인 필수(서식 분양홍보관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 확인서 등

<표6>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일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화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시공사 홈페이지 및 계약체결장소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⑩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분양홍보관 비치
		○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⑥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자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장소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아래<표7>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분양홍보관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④ 실거래신고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 게시 예정]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인지세 납부 여부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역·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 일반사항

-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당해 구역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이후 당해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구역 인접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구역 외 북측 인접 일부 건축물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이 단지 구역 내로 매설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구역 외 지장물(현대시장 측 지장물, 전주 등)로 인해 구역 인접 도로가 입주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당해 구역 서측으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동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위치한 기반시설(소공원)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설계변경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공원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단지 내를 횡단하고 있던 북측의 공공하수관로가 철거(폐공)됨에 따라, 제척구간(답십리동 12-157, 12-51, 12-11, 12-12, 12-148번지 등) 공공하수관로가 단지 내에 신설(구역 외 공공 하수관로로 인입)될 예정이며, 인허가 관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지 내 구분지상권이 설정 예정임에 따라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급격한 수용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학교에 수용 예정입니다.
- 본 사업지의 학생배치 관할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이며,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인근학교(군자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동부2학교군'에, 고등학생은 '동부학교군' 내 배정 가능하나, 추후 관할교육청의 학교배치관련 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정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공동사항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구역 내 외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 의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 및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시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전체 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 및 유리난간 설치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후면 보차도를 이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함.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영구배수공법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은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 동출입구의 통로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쓰레기분리수거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세대의 경우 냄새,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청소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용중단으로 불편함이 있음.
- 거실발코니 및 일부 침실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확장 전 발코니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폐기물 보관시설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 및 주차장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종 동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배수, 제연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 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송풍기 미가동 시와 일부 환기 취약장소는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의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사생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조영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등 마감자재는 동일 평형일지라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제작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동체감지기는 아파트 시작층인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101동 복도측 창문의 동체감지기는 전층에 설치되어 있음.
- 실내 및 외부에서 일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홈네트워크 설비로 설치됨.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동의 저층부 등 일부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일조권 소음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주민공용시설 등에 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에는 운동기구가 설치 예정이고, 이외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내부시설(인테리어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이 커지므로 초기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람경보가 울리게 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 기준)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진입제한높이: 지하1층 2.7m, 지하2층:2.3m, 주차공간 높이: 2.1m 제한구역이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보행자출입구,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 쓰레기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접촉 진입 가능한 공동현관, 승강기 자동 호출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원패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씽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며, 개별로 설치하는 정수기 및 음식물 처리기 설치에 불리할 수 있음.
-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경사도로 및 곡선도로, 주 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생활불편사항 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될 수 있고, 지하 최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된 제습기를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남측과 북측에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남측 보행자 출입구는 비상차량출입구와 경용으로 사용됨.
- 단지 서측 소공원으로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주출입구의 문주 형태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아파트와 상가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이동통신중계장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비대상 건축물로 설치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환풍에 추후 설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됨.
-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용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주거/비주거 차량과 공용 사용되며, 102동 주차램프 진입 후 지하1층에서 일부가 비주거용(근린생활시설) 주차면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12M 도로에 위치하며, 진입1차로, 진출2차로 구성됨.
- 단지 외곽은 헨스 시설이 설치되며, 주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 및 수급여건 등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의 각 종 기구와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폐기물 보관시설, 자전거보관소, D/A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눈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단지외관, 조경시설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설비는 102동, 104동, 106동에 설치되며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하게 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인입밸브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동 및 102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일부 세대는 지상, 옥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따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정화조 설비가 105동과 106동 사이에 위치에 있으며 해당 동 및 인근 세대에서는 이로 인해 배기설비(105동 옥상설치)에 의한 소음 및 냄새등의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위치변경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북측 기존 공공하수관로(단지내 횡단)가 철거(폐공) 됨에 따라 제척구간(답십리동 12-157, 12-51, 12-11, 12-12, 12-148번지 등)의 하수관로(공공 하수관로) 등을 단지 내 신설하여 단지 외 공공 하수관로로 인입 배출하는 관로가 단지 내 신설될 예정이며, 유지보수 시 단지 내 부지에서 보수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 사업부지경계선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인접 기반시설(도로 등)은 철거 및 포장(인도 및 도로 : 경계석, 보도블럭, 차선도색, 배수관로, 측구, 포장공사 등) 공사가 입주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 태양광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유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105m/min, 옥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공용부

- 단지 총세대수는 326세대로 일반분양(121세대), 토지등소유자(146세대), 보류지(1세대), 재개발임대(58세대)로 구성되었음.
- 단지는 계단형 아파트 5동, 복도형 아파트 1동으로 구성되었음.
- 주차시설은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며,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 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사용가능하고, 개인차량은 사용불가 함.
- 지하주차장은 101~106동 구역은 2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배치계획 상 불가피하게 모든 동의 지하주차장이 균등하게 계획되지 않았음.
- 단지내 동별 위치에 따라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다를 수 있음.
- 단지내 동별 위치에 따라 주·부출입구로부터 각 주동 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넓이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모든 주동은 입면변화에 따른 거실, 침실부위 일부가 돌출 형태로 시공되어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운행 및 불빛(차량전조등 포함),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102동~106동은 지상 1층 동출입구 이용 시 1층 세대 및 1층 엘리베이터홀 진입동선이 계단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실시공사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물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관련법상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었으며, 계단실은 엘리베이터홀 창호가 없는 경우 전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 엘리베이터홀 창호가 있는 경우 일부창호만(최하층 2개소, 최상층 2개소)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TOP LIGHT, 자전거보관소, 폐기물보관시설, 주차관제용 출차주의등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비상차량출입구로 차량 진입 시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일부 겹치므로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소지가 있음.
- 경관조명(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일부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TV(FM)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102동), 피뢰침(102동, 104동), 태양광발전설비(102동, 104동, 106동), 웨더스테이션 안테나(106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102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되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제습장치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함.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기동 디자인에 따라 설치 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15대로 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급속 1개소)
- 전기자동차 전용 급속충전기(50KW) 1대, 완속충전기(7KW) 7대, 이동형콘센트형 7대가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됨.
-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으로 공동창고기 위치하며, 공동창고 내부에는 별도의 보관시설물 등이 제공 되지 않음.
- 폐기물보관시설는 단지 내 3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각종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 제연 환풍, 환기탑, 환풍이 설치되어 해당설비 가동 시 진동, 소음, 열기, 급·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음.
- 106동 인근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위치하여 전기안전공사 년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의 시운전시 D.A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동출입구 및 세대 저층부 3개층(필로티 외벽면 포함, 필로티 내벽면과 계단실, 공용홀은 제외)은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전층 외벽면은 석재마감으로 적용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101동 105동 106동은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102동 103동 104동은 1개의 코어에 각 2대씩 있으며, 101동~106동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겸용 이며, 102동 옥외용 승강기는 장애인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8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1동 아파트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일부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마감 중 석재마감 부위는 천연석으로 시공되며, 천연석의 특성상 약간의 색상차이 또는 특정무늬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하부 지하주차장 램프와 세대가 인접하거나 일부 직교하는 구간이 있어 야간에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102동 하부로 차량 통행이 있어 차량 입출차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2,106동 2층 세대는 발코니 외부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지붕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지붕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6동은 주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 설치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단지 진출입 차량 등에 의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따른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저층 세대는 1층 경로당, 관리사무소(방재실, MDF실포함)가 위치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음식냄새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저층 세대는 1층 보육시설의 음식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06동 인근 지하층에 전기실·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102동, 104동, 106동 옥상(지붕층)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분양자료와 다를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됨.
- 각종 인쇄물 및 조강도, 투시도,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장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인허가 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3층이하) 석재(일부구간 및 코아부분 제외),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됨.
- 105동은 축벽LED(BI)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1동 8호라인, 102동 1호라인 주차장 급기 DA가 있어 장비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2호라인, 105동 1호, 2호 4호라인, 106동 1호, 3호라인에 주차장 배기 및 제연 급기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105동 지하에는 기계실 및 정화조, 우수저류관리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함.

■ 단위세대

- 카달로그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실시공시 시공 오차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도면치수와 안목치수는 마감재 및 시공오차에 따라 실벽 실측치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축벽세대와 축벽세대가 아닌 경우, 세대 내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숙지하기 바람, 동일 타입이라도 세대위치에 따라 치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전, 가구 등 설치 시 반드시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는 대칭형 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됨.
- 주택형별로 확장 부위와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및 가구의 설치공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23년 08월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 도면 기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없음
 - 주방가구와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후면에는 타일 및 도배 등 별도 마감재가 없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 및 강마루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고정형 가구, 거실 아트월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수성페인트가 설치 됨.
- 세대 모든 욕실은 습식욕실로 되어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는 안여달이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모든 세대에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음.
- 침실, 거실 또는 주방 다용도실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 설치로 점검구가 설치로 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단위세대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101동 주방 및 욕실은 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주방의 음식 조리 시 냄새, 화장실의 담배냄새 등)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음.
- 102동~106동 세대의 욕실 및 주방 환기는 세대별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음.
- 발코니에 우수홍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또는 배수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전·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될 수 있음
- 세탁기설치 발코니에 시공된 우수관 및 배수관이 시공상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 통기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세대별로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수전과 간섭 시 수전 방향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우수, 배수 선홍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급수, 급탕분배기는 보일러 하부에 설치되어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별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가 설치된 다용도실에는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수도계량기 등이 세대현관문 주변 PD내에 설치되어 있고, 세대 계량기(급수, 가스, 전기)는 원격 검침방식임.
- 아파트 특성상 세대 욕실, 주방 및 공용부 PD에 3개층마다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되며, 해당위치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배집)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손상시킨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설비 가동 시 소음발생 및 장비점검 및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천정은 마감이 없이 노출되어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크기에 따라 발코니는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와 수전이 간섭되어 수전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저층부(1~3층) 세대 세탁기설치 발코니에는 고층부 배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발코니가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가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됨.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 또는 부대시설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측벽 또는 계단실 외벽 등에 접하는 세대는 구조적 특성상 커튼박스의 길이가 짧을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아파트 특성상 욕실 및 각종 PD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욕조하부, 샤워실 바닥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바닥(거실) 마루 색상은 동일 회사의 생산제품이라도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어 우천 및 배수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 세대현관문의 도어스토퍼 (일명:말발굽)는 설치되지 않음.
- 안방(침실1) 분함문에는 수동형 잠금장치가 설치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와 외부석재마감 사이 벽체는 도장 마감임.
- 최상층 세대 발코니 천정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석고보드)가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 세대 주방 렌지후드 상부의 가구장 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벽체 및 바닥에 설치되는 타일의 나누기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우물천장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아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세대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와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욕실/현관 등은 바닥 단차로 인하여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목창호에는 손끼임방지재 설치되어 있음.
-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체크 압력 장치를 임의로 조정 시 개폐압력 과다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책임지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외부에 노출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세대내 경량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벽은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벽면에 중량물 설치 시[(예)벽걸이 TV 등] 벽체 드릴링, 못 박기 등에 의한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벽에 매립 되어있는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배관 배선을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주방 후드 상부장에 후드배관 등이 설치되어 사용 및 점검 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면과 바닥에는 합판마루, 타일, 몰딩, 걸레받이, 도배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세대 주방가구 바닥은 난방배관 동선 확보를 위하여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입면변화구간의 발코니 천정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다른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난간은 거실 및 특정부위에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유리난간이 적용 되어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내측과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가스보일러 및 세대 주방에 가스공급은 도시가스로 공급됨.
- 101동 세대의 세탁실 발코니 천정과 102동~106동 세대의 실외기실 천정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세대 급·배기를 위한 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승강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시스템은 계절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환기 필터 교체 알람시 교체 필요(개별 별도 구매 후 교체)
- 동일 타입이라도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 VR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 및 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59㎡, 84㎡은 주방TV가 설치되며, 29㎡, 41㎡, 53㎡은 주방라디오폰이 설치됨.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 세대 안방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공급됨.
- 세대 내·외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진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경량충격음_1등급, 중량충격음_3등급).
- 발코니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부 미관이 저해되거나, 설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 및 소음 발생량이 다를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세대 안방 및 거실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배관 경로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시스템 에어컨 설치세대 제외)
- 에어컨 실외기 중 일부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품설치 전 실외기 폭(크기)의 확인이 필요함
- 101동은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동일공간에 근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사용상 간섭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102동~106동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안방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어 현재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에어컨 제품의 설치가 가능함.(단, 설치위치는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천정형 에어컨 설치는 기존 매립배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 설치) 또한, 기타 침실 및 주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방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안방과 거실사이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냉매박스 좌우 모서리 기준 15cm 이내의 못박음이 등이 곤란하며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냉매매립배관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음.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복구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음.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형식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와 세대 환기장치가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됨.
- 에어컨 형태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문이 열려있을 경우 소음과 열풍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단, 설치위치는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천정형 에어컨 설치는 기존 매립배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설치해야 함.)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실외기 하부에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로 인한 발코니 공간 협소 및 일부 도어 개폐시 간섭될 수 있음.
- 루버창이 설치된 타입은 실외기 작동시 루버를 개방 후 사용해야하며, 실외기 작동 시 소음·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세대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설치 전 실제크기를 확인하여 배치조정 바람. 일부세대 발코니에 드럼세탁기 설치시 내부치수 협소로 배치조정 필요함.

- 또한 기타 침실 및 주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방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에어컨 실외기 중 폭 950mm 이상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품설치 전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매립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방식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루버를 개방후 사용하여야 하고, 실내기 드레인(물빠짐) 배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기준층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위세대에 표현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주방벽 타일 및 욕실벽 타일, 거실 디자인 월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의 바닥타일 패턴은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일랜드장(해당타입)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위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위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도어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선반(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튼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타일 마감이 없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단내 표현된 빌트인 가전(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및 엔지니어드스톤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되는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옵션 포함)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받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1(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쉴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다용도실에 건조기 설치시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도어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개폐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گیر 방지 장치가 설치된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확장 기본형 지급품목은 평면의 형태 및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타입 확장 기본형 세대에 설치되는 냉장고 수납장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의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설치시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59A 타입 냉장고장은 입주자가 갖고 있는 냉장고 크기 및 열림방식에 따라 벽체와 문열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도어 재질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동빨래건조대는 리모컨으로만 작동되며,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전동빨래건조대는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안방 발코니제외)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등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 침실1(안방)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강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과 다용도실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전원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발코니 바닥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높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은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가동 시 음압으로 인한 소음 및 주방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방 창문을 개방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오배수 배관은 총상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배수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 결로 배수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주방TV, 욕실폰,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소방시설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음.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함.
- 본 공사시 전기분전함은 관련 법규 변경으로 59A 침실1, 59B 침실2, 84A 침실2, 84B 침실1, 84C 침실1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통신단자함은 59A 침실1, 59B 침실2, 84A 침실2, 84B 침실2, 84C 침실2 매입설치(커버노출)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음.
-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일괄소등 스위치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기질 센서(1개소 설치)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한 대용량 가전기기 또는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자 세대 전기 용량과 맞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입주자 공사분으로 미설치됨.

■ 부대시설부문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지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건립되는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은 입주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입주지정일 이후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에는 운동기구가 설치 예정이고, 이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내부시설(인테리어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함.
- 단지 내 피트니스 및 샤워실,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본공사시 디자인 및 마감재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은 2023.05.13.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국공립으로 운영 예정임.
- 피트니스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피트니스(102동 지하1층)를 제외한 관리사무소(102동 1층), 작은도서관(101동 1층), 어린이집(106동 1층), 경로당(102동 1층) 등은 지하주차장 이용시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야 함.
- 단지내 별도의 무인택배보관함(냉동, 냉장 제외)이 각동 지하1층(6개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된 알라미농창호는 환기 부족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가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주지원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지하1층에 설치된 다목적실(CS센터)은 준공시 입주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산으로 활용되며, 활용기간 동안(사용기간 변경 가능)은 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며, 활용기간 후 입주민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됨.
- 단지 내 외부시설(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격 및 색상은 현장여건, 측량결과,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건축심의 의견으로 지하주차장 1층에 3면이 설치되어 있음.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냉,난방 및 배기설비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층 작은도서관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02동 1층 부대시설(관리사무실, 경로당)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02동 지하층 부대시설(피트니스)의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02, 103동 부대시설(피트니스+용역원실,샤워실)의 PIT층 오배수펌프 가동시 상부층 인접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06동 1층 부대시설(어린이집)의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인접 세대의 경우 부대시설용 오수펌프로 인한 냄새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 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15%가 지하주차장내 동별 설치. (냉동, 냉장함 제외)
- 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터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 받아야 함.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부대시설	진입도로	• 12m 도로(주출입구,보행자출입구), 8m 도로(보행자출입구), 서측(소공원 방면) 보행자 출입구	
	단지내도로	• 2 ~ 6m 도로	
	관리사무소	• 102동(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103동 지하1층(용역원휴게실)	
	경비실	• 주출입구 1개소	
	통신기기실	• 각동 지하 1층	
	기계/전기실	• 지하주차장(우수기계실 포함)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363대 (장애인주차 11대, 여성주차 37대)	
복리시설	휴게시설	• 102동 배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 104, 105동 사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 105동 좌측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주민공동시설	망스태이션	• 106동 지상1층
		피트니스	• 102동 지하1층
		샤워/락커실	• 103동 지하1층
		DROP_ZONE	• 106동 우측면
	경로당	• 102동 지상1층	
	작은도서관	• 101동 지상1층	
	어린이집	• 106동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 102동 우측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1 • 103동 배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2 • 106동 전면 지상1층 유아놀이터		

4. 기타 유의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예비인증 되었음.
- 본 사업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동대문구청에 2023.08.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인가될 예정임.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59A, 59B, 84A, 84B에 대하여 제작되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59A, 59B, 84A, 84B) 또는 팜플렛 상의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동일 단지 내 동일한 평면 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59A, 59B, 84A, 84B) 및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이버 모델하우스(59A, 59B, 84A, 84B) 및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59A, 59B, 84A, 84B)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통신월패드, 현관도어폰은 모양,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59A, 59B, 84A, 84B) 및 팜플렛 상 마감재 수준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구역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에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 사이버 모델하우스 단위세대는 59A, 59B, 84A, 84B타입에 대하여 VR로 제작되었습니다.
 - 세대VR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시품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대VR내 인테리어 소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및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VR내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별 동호라인의 조망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전기류(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충분히 확인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의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CG, 세대VR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또는 팜플렛 상의 내부 시설 마감은 자재품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동일 단지 내 동일한 평면 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세대VR 등에 표현된 마감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무늬가 실물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VR의 일부 마감재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의 각종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위치, 창호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피난사다리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에,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오기의 정정,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상의 평면도와 달리 향후 인허가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구역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 할 수 없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담십리 17구역 재개발 아파트 건설공사	인증번호	16-주-에-1-0186
준공연도	2020년 12월 31일	평가자	박한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1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 면 적	44292.72(㎡)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주)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지소비량 건축실계	89.3	에너지효율 높음	1	CO ₂ 배출 적음	33.5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실계		에너지효율 낮음		CO ₂ 배출 많음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0.4	77.0	60.1	16.1
급탕	30.7	34.5	25.6	7.0
조명	18.2	17.4	47.8	8.2
환기		4.6	12.7	2.2
합계	89.3	133.5	146.2	33.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6년 11월 09일

한국감정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담십리 17구역 재개발 아파트	인증번호	KRI-17-664
건축주	에스에이치공사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유효기간	2017. 02. 15 ~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지하2층, 지상7~21층	인증 등급	
면 면 적	43,707.14㎡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 계 자	(주)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17년 0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주택 평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 면하는 창호는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세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 내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정멸스위치	적용	부대 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 공용화장실 자동정멸스위치(마이크로파 방식)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시행자)	시공회사(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등록번호 : 111171-0007324)	디엘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3115)

6. 분양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사이버 모델하우스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80-7, 203호
- 분양문의처 : 02-3394-4494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